

#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0 - 13

제안연월일 : 2000. 4 . .

제안자 : 거창군수

## 개정사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감면 규정의 불명확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개선 보완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전환 및 기타 법령조문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안제2조)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

### ○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안제2조 및 제4조)

-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
-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또는 세대 분가시 추징규정을 신설하여 악용사례 방지
-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선택하여 신청토록 함.

(최초 취득한 1대 ⇒ 감면신청하는 1대)

###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안 제10조)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면제 전환

(재산세 0.15% 과세, 종토세 50% 경감 ⇒ 전액 면제)

○ 주차장에 대한 과세전환 (안 제15조 및 제16조)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차량의 도심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등 감면 취지에 위배되어 과세 전환

○ 기타 법령조문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근거

○ 경상남도세정 13415 ~ 11286호(1999.12.20)

○ 경상남도세정 13415 ~ 10035호(2000. 1.11)

#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1항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를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로 하고, “취득한”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며, 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항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

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며, 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본문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 단서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로 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를 "선정을 받은 자 (농어촌특산품생

산단지육성사업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포함한다)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고, 제3항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제28조의5”로 한다.

제15조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로 하고,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를 “동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로 하며,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2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으로 하며, 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으로 하고,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단서신설&gt;</p>	<p>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 ..... ..... .....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 .....감면 신청하는 ..... ..... .....</p> <p>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 4.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u>허가</u>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u>허가</u>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p>	<p>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u>등록을 한 자</u>..... ..... ..... ..... ..... .....</p> <p>2. (현행과 같음)</p> <p>3. ....<u>등록을 한</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p>	<p>.....</p> <p>.....</p> <p>.....</p> <p>.....</p>
<p>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 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p>	<p>&lt; 삭 제 &gt;</p>
<p>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p> <p>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턴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p>	<p>&lt;삭 제&gt;</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금액으로 한다.</p> <p>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 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 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p> <p>연간수입금액 =</p>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p>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p>	
<p>제20조의2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2호 및 동조 제5항</u></p>	<p>제20조의2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u>.....</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호·3호</u>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u>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u>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u>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li> <li>2.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u>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li> </ol>	<p>.....</p> <p>.....</p> <p>..... <u>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u>.....</p> <p>.....</p> <p>.....</p> <p>.....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u>.....</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u>.....</li> <li>2.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u>.....</li> </ol>